

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 】

현행	개정	비고
제 24 조(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) ① 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 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 대하여 회사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	제 24 조(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) ① 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 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하여 회사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. ② ~ ③ (기존과 동일)	자구 수정
<신설>	부칙 이 약관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	부칙 추가